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0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.

발 의 자:이용우·홍성국·홍기원

이규민 · 김정호 · 고영인

임호선 · 홍정민 · 이용빈

강준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 보다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따라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실 거주자들이 급격히 상승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.

이에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제8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- 1.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
- 2. 실거주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~ ⑦	제9조(세율 및 세액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⑧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
	호에 모두 해당하는 납세의무
	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
	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
	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
	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
	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
	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
	를 이연받을 수 있다.
	1.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
	<u>자</u>
	<u>2. 실거주자</u>